

2026학년도 부산광역시 공·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실기시험 시행계획(음악)

I 시험 개요

1. 시험일시: 2026. 1. 14.(수) 09:00(08:20까지 입실완료)
2. 입실장소: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응시자 대기실(1층)
[부산 부산진구 성지곡로 15]
3. 시험종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

종목	세부내용	배점	비고
청음	◦ 청음(단선율 8마디, 3문제) - 음원파일 활용	5	◦ 시험시간: 30분 ◦ 연필 작성 부분 채점 안함
국악기 실기	◦ 국악기 연주(무반주, 암보) - 소금, 대금, 피리, 단소, 해금, 가야금, 거문고, 아쟁 중 택 1	5	◦ 국악기 본인 지참 ※ 소금, 단소는 개량악기 사용 금지 ◦ 무반주로 외워서 시험 ◦ 연주시간 3분 이내
피아노 반주와 가창	◦ 자신의 피아노 반주로 노래부르기 - 반주악보 없이 코드가 명시된 가락 악보(제시)중 응시자 개별 추천으로 선택한 1곡을 피아노 반주하며 노래부르기(코드 변경 가능)	12	◦ 2015, 2022 개정 교육과정 중·고등학교 「음악」 교과서에 수록된 곡
장구 반주와 가창	◦ 자신의 장구 반주로 노래부르기 - 제시된 국악곡 중 응시자 개별 추천으로 선택한 1곡을 장구 반주하며 노래부르기	8	◦ 2015, 2022 개정 교육과정 중·고등학교 「음악」 교과서에 수록된 곡 ◦ 장구 및 장구채 제공 ※ 단, 장구채는 본인 지참 가능
합계		30	

※ 시험진행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

※ 시험진행 순서: 청음→국악기 실기→피아노 반주와 가창→장구 반주와 가창

Ⅱ 응시자 유의사항

1. 응시자 대기실 입실 완료: 2026. 1. 14.(수) 08:20까지 **부산광역시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** 응시자 대기실(1층)
2. 지참물
 - 가. 응시수수료: 금10,000원(당일 지참)
 - ※ 1차 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시 납부 가능
 - 나. 2차 시험 수험표, 신분증, 검은색 펜(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것), 실기시험 응시자 준비물, 점심 도시락, 식수 및 간식 등
3. 1차 시험 수험표는 사용할 수 없으니 **반드시 2차 시험 시험실이 인쇄된 수험표를 컬러로 출력하여 지참**하기 바랍니다. 실기시험 당일 수험표를 지참하지 못한 응시자는 08:15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'수험표 재발급 장소'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
 - ※ 실기시험 수험표는 별도로 없으므로 2차 시험 수험표를 활용함
 - ※ 수험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사이트(<https://edurecruit.go.kr>)에서 2025. 12. 26.(금) 10:00부터 출력 가능함
 - ※ 사립(2차) 위탁법인 1차 합격자 수험표는 해당 법인 임용예정 학교에서 배부
4. 응시자에 대한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사전에 시험장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.(시험실 입실은 불가)
5. 응시자는 반드시 점심 도시락, 식수 및 간식을 지참하여 대기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바랍니다.(시험장 출입 통제)
6. 관리번호는 시험 당일 응시자 대기실에서 응시자 본인의 추첨으로 부여합니다.(청음 제외)
7. **특정 대학** 등을 표시하는 복장 착용을 **금지**합니다.
8. 감독관이 시험시작 전에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등 소지(반입)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시험실(장)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.(시험시작 전에 수거하여 시험관리본부에 보관하고,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반환함)

9.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
10.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,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및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>

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1조의2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-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③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⑤ 병역사항, 가(산)점,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(증빙)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

<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>

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
- ① 시험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- ②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**실기 결과물을 변형하는 행위**
 - ③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
 -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
 - 시험실(장)에 '소지(반입)금지 물품'을 반입하여 시험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**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**
- ▶ 소지(반입)금지 물품

휴대전화, 블루투스기기, 이어폰, 스마트워치(밴드)·스마트센서, 태블릿PC, 노트북, 넷북, 디지털 카메라, MP3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(PMP)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캠코더, 전자시계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전자담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

※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(반입)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※ 응시자가 시계를 반입하는 경우,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는 아날로그 손목시계(바늘시계)만 반입이 가능합니다.

- ④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나. 문의처: 교원인사과 ☎ 051) 860-0156, 0158, 0453